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 년 12 월 28 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헤이스팅스자산운용주식회사
(영문명) Hastings Asset Management Co.Ltd
(홈페이지) <http://hastings.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304, 2층 2호(역삼동, 금강빌딩)
(전 화) 02-6929-0115

대 표 이 사 : 서 태 원

당 당 임 원 : (직 책) 부 사 장
(성 명) 최 재 두 (전 화) 02-6929-0126

작 성 자 : (직 책) 주 임
(성 명) 구 동 진 (전 화) 02-6929-0118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5-1-1호)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00,000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76,692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운영자금 (원)	1,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		제3자 배정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상환권 및 전환권이 부여된 경우】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상환방법	
	상환기간	
	주당 상환가액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채무약정 사항 등)		

【상환권이 부여된 경우】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상환방법	
	상환기간	
	주당 상환가액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전환권이 부여된 경우】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확정예정일	
		기타주식 (원)	확정예정일	
7. 발행가 산정방법				
8. 신주배정기준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12. 납입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확정예정일	
		기타주식 (원)	확정예정일	
7. 발행가 산정방법				
8. 신주배정기준일				
9.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0.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일반공모			
11. 납입일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13. 신주권교부예정일				
14. 신주의 상장 예정일				
15.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일반공모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9.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일반공모	
10. 납입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23.12.27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03.3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2.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9조 제4항	지배구조변경 및 자본확충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 주식수(주)	비고
신상국	기타	이사회	차입 500,000,000원	100,000	-
주식회사 동암씨티	없음	이사회	없음	100,000	-

<기재상의 주의>

주1) 유상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한다.

주2) “신주의 종류와 수”,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신주 발행가액”에는 보통주식과 기타 주식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가. 보통주식 :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주식

나. 기타주식 :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상기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주식

주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에 관한 결정일 현재의 해당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기재한다.

주4) “증자방식”에는 주주배정증자, 주주우선공모증자, 일반공모증자 또는 제3자 배정증자 방식 중 해당 증자방식을 기재한다.

주5)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 주식의 발행에 관한 정관의 근거, 해당 주식의 내용 등을 기재한다. 해당 주식의 내용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3-4-3조(다양한 종류의 주식)의 작성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주6) “신주발행가액”은 공시일 현재 발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발행가를, 예정가액만을 정한 경우에는 그 예정발행가 및 확정예정일을 기재한다.

주7) “발행가 산정방법”은 기준주가 결정방식 및 적용 할인을 또는 할증율 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할인을 또는 할증율은 보고일 현재 이사회 등에서 정한 할인을 또는 할증율을 말한다.

주8) “신주발행가액”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발행가 산정방법”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주9)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할인율을 기재하고,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등에서 회사에서 정한 할증율을 기재한다.

주10)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소유주식 1주당 유상으로 배정할 신주의 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한다.

주11)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의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에는 3자배정

증자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회사의 정관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제3자 배정 증자의 목적”에는 3자배정 증자의 사유, 증자대금의 사용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 주12)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의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에는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회사, 기타 등으로 기재하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체적인 관계를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한다.
(예시)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 최대주주인 (주)ABC의 임원
- 주13)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의 “선정경위”에는 3자배정 대상자를 선정한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증자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에는 이사회결의일 전후 6월 동안의 회사와 배정대상 제3자와의 거래내역 및 향후 계획(제품매출·매입, 자산매각·매수, 담보 제공 등 제반거래 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비고”에는 보호예수 기간 등을 기재한다.
- 주14)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에는 제3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신주인수를 통해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에 기재한다. 이 때 “최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최대주주를 말하며,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 또는 단체”로 본다.
- 주15) 상기 기재사항 외의 신주권리내용의 특이사항, 신주권교부예정일, 단주처리방법, 자기주식 등 신주의 배정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 배당기산일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 주16)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 주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해당 보고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해당여부를 기재한다.